

**꼭 지켜주세요!**

- **현장실습생 실무교육 투입 전 입문교육 필수**  
기업에 대한 기본 정보, 직무 소개, 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등
- **현장실습 시간 준수**  
1일 7시간, 주 35시간 이내  
(단, 당사자 서면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5시간 한도 연장실습 가능)
- **야간실습 및 휴일 실습 불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실습 불가, 주 2회 휴일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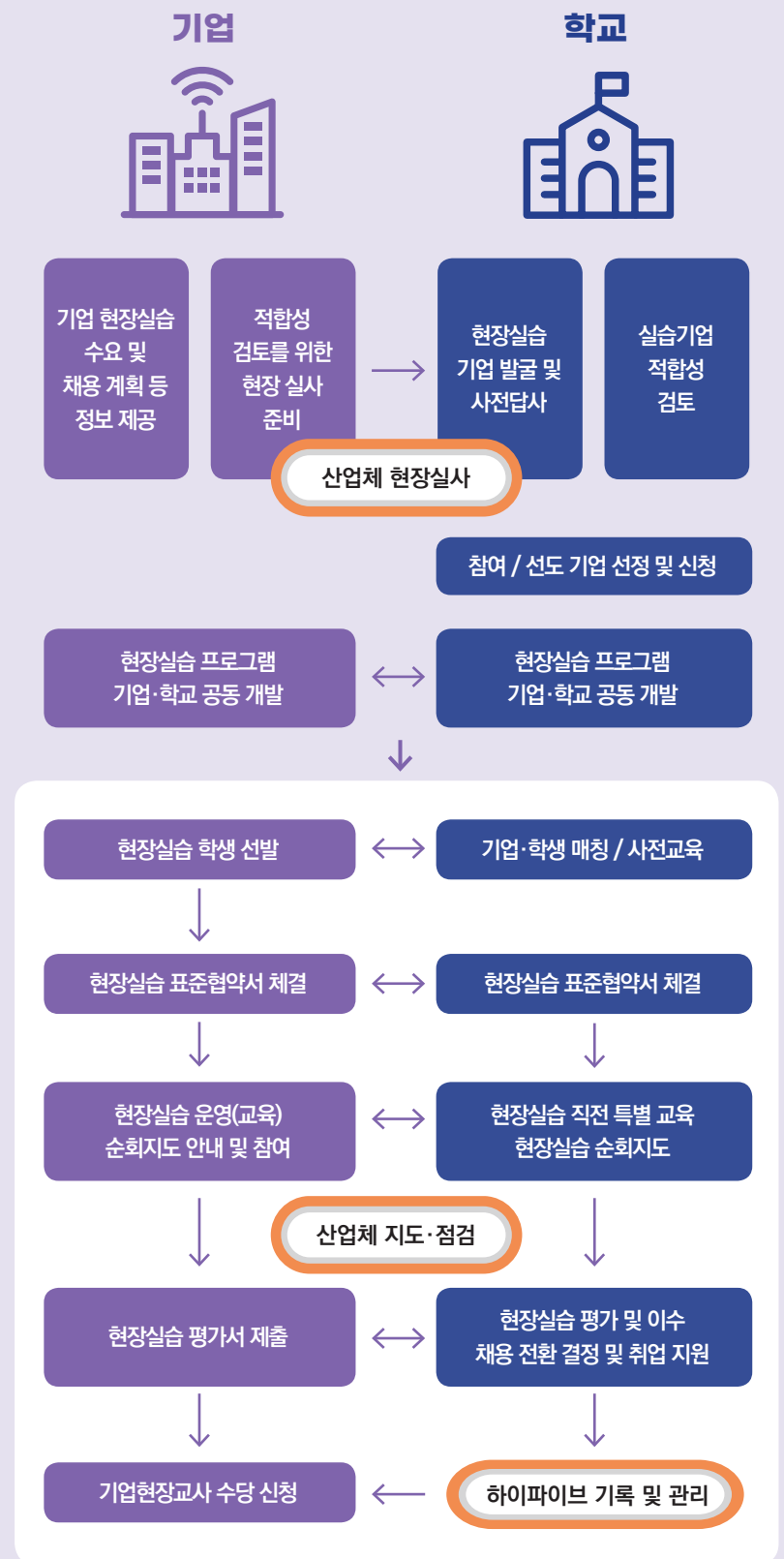
**기업현장교사 자격 및 역할**



- **기업현장교사 자격요건(아래 자격요건을 한 가지 이상 충족)**
  -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 분야 1년 이상 훈련 지도 유경험자
  - 정부 출연기관 등 연구기관 또는 기업 부설 연구소에서 해당 분야 연구경력자
  - 법률에 따른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 해당 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 **기업현장교사 수당**
  - 현장실습생 수에 따라 30,000원~35,000원의 실습지도 수당을 최대 210만원 한도로 지급함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기업현장교사가 직접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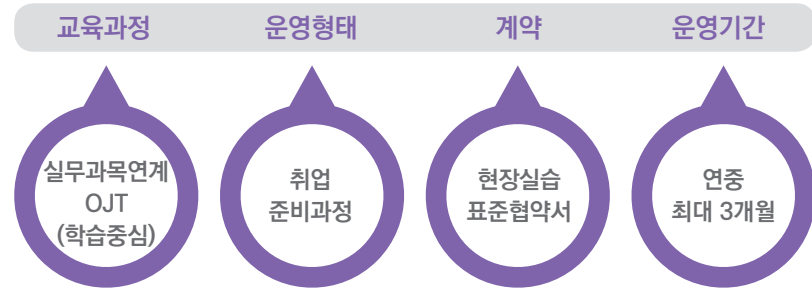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흐름도**



**2023년 개정**



## 학습중심 현장실습



※ 시·도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개월 이상 가능  
 ※ 현장실습표준협약과 근로계약은 동시 체결 불가



## 현장실습 전 확인해주세요!



※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책임자에게 5만원 이내 수당이 지급 됩니다.

##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 산업체 지원 정책

### 현장실습 참여 기업

- **현장실습 비용 세액공제**  
현장실습생에게 지급된 수당, 식비, 교재비, 재료비의 세액공제 국세청 콜센터 (126)
- **현장실습 기업 현장 교육 지원금 지원**  
기업 현장교사에게 1인당 최대 210만원 지원 한국장학재단 취업연계 담당 (1800-0499)
- **산재 예방시설 용자 지원사업**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등 산업재해 예방시설 설치비 장기, 저리 조건 용자 지원(사업장당 10억원 한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544-3088)

### 현장실습 선도 기업

- **위험성 평가 인정 인센티브**
  - 1 인정 유효기간(3년) 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 유예
  - 2 산재보험료 20% 인하(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만 해당)
  - 3 정부 포상 또는 표창의 우선 추천
  - 4 기술보증기금 보증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 비율 100% 적용, 보증료율 0.2%p 감면
  - 5 인정사업장은 현장실습 현장실사 미 실시 및 선도기업 지정 가능 위험성 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1644-4544))
-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지원사업 가점 부여**  
중기부 중소기업 지원사업(R&D, 수출 등) 참여 시 가점 5점 부여 중소기업부 일자리정책과(042-481-1664)
- **시중은행 기업 대출금리 우대**  
국민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금리 우대(0.25~1.3%) 등 은행별 고객센터
- **병역지정업체 가산점**  
10인 이상인 중소기업이 선도기업 선정 시 병역지정업체 선정에서 5점 또는 7점 부여 중소기업부 종합상담센터(1357)
-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우대**  
보증료율 0.1%p 차감 적용 신용보증기금 고객센터(1588-6565)
-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 보험료 할인을 우대**  
매출채권 가입 시 산출보험료의 5% 할인 신용보증기금 고객센터(1588-6565)
- **인적자원 개발 우수기업 인증평가 가점 부여**  
"선취업-후 학습기업"분야 인증 심사 시, 선도기업 가점 5점 부여 (민간부문) 사업공고 내 문의처 참고 (공공부문) 한국 직업능력연구원 사회정책 연구센터(044-415-3941)
- **신용보증기금의 경영 컨설팅 등 수수료 우대지원**  
4백만원 한도 내에서 경영 컨설팅 수수료 지원 신용보증기금 기업컨설팅부 (053-430-4684)
- **기술보증기금 일자리 평가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현장실습 선도기업은 일자리 평가 우수기업 선정을 위한 5점 가점 부여

※ 기업지원정책의 자세한 사항은 큐알코드로 고졸만접 접속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고졸만접-소통·홍보실-카드뉴스·웹툰·영상·간행물-간행물)



##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권익을 지켜주세요! (적용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29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3조, 제114조제3항, 제131조, 제138조제1항, 제140조, 제155조부터 제157조까지를 준용함("사업주"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으로, "근로"는 "현장실습"으로, "근로자"는 "현장실습생").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근로기준법 추가 준용사항

1. 일부개정(‘23.3.30.) 사항 - 「근로기준법」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제36조(금품청산),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제77조(기능습득자의 보호) 및 각 조항 위반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로 부과 조항이 추가 준용됨 \* 제107조,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1호, 제114조제1호, 제116조
2. 일부개정(‘23.3.30.) 사항 - 준용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학교장) 또는 직업교육훈련교원(교사)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같은 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를 요구할 수 있음.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4조에 따른 「근로기준법」 준용 조항 해설

구분	준용 조문	요약	의미·해석	비고	
본문	제54조 (휴게)	현장실습 4시간 마다 30분 이상 현장실습 도중에 휴게시간 부여	계속 실습으로부터 현장실습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실습 시간 4시간 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현장실습 도중에 부여하도록 하고 있고,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장되어야 함.		
	제65조 (사용금지)	18세 미만자 유해위험 사업 사용 금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도덕상 또는 보건 상 유해위험 사업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업에서는 18세 미만자를 고용하지 못함.		
	제72조 (경내근로의 금지)	18세 미만자 경내 근로 금지	경내는 작업 환경이 열악하고 위험하며, 호흡기 질환 발생 가능성 등이 높은 장소이므로 18세 미만자 현장실습을 금지함.		
	제73조 (생리휴가)	여성 현장실습생 청구 시 월 1일 생리휴가 부여	여성 현장실습생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월 1회 청구하는 경우에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하도록 허용함.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	현장실습생 자유의사에 반하는 실습 강요 금지	경제적으로 힘의 우위에 있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폭행, 협박, 감금 등 일체의 수단을 이용하여 현장실습생에게 실습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함.		
	제8조 (폭행의 금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써 현장실습생에 대한 폭행 금지	현장실습생의 인격권 보호를 위하여 사고의 발생이나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금지됨.		
	제9조 (중간착취의 배제)	제3자가 현장실습 계약 관계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금지	직업안정법, 파견법 등 다른 법률에 근거 없는 현장실습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영리로 타인의 현장실습이나 현장실습 계약 관계 존속에 개입함으로써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함.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현장실습생이 공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	현장실습생이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근로시간 중이라도 승인하여야 하고, 다만 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됨.		
	별치	제109조제1항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금지 위반, 경내근로 실시 및 금품청산 위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시 제재	제65조 및 제72조 위반 시 적용(7년) 제36조, 제76조의3제6항 위반 시 적용
		제110조제1호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휴게시간 미부여 및 공민권 행사 미보장 시 제재	제54조 위반 시 적용(기존) 제10조 위반 시 적용
과태로	제114조제1호 (벌칙)	500만원 이하의 벌금	생리휴가 미보장 및 기능습득자 보호 위반시 제재	제73조 위반 시 적용(기존) 제77조 위반 시 적용	
	제116조제1항 (과태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로	사용자(일정 범위 내 친족 포함)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의 제재	제76조의2 위반 시 적용	
	제116조제2항 (과태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로	사업주의 괴롭힘 조사실시 의무(제2항), 괴롭힘 확인 시 조치 의무(제5항) 및 조사 권자 등의 비밀유지 의무(제7항) 위반 시 제재	제76조의3제2항-제4항-제5항-제7항 위반 시 적용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	500만원 이하의 과태로	현장실습 계약 미체결, 표준협약서 미사용, 현장실습 기간, 방법, 담당자 배치, 현장실습 수당, 안전·보건상의 조치, 현장실습 내용이 변경절차 등 현장실습 협약서 사항 미준수 시 제재	<과태로 부과 권한 위임> 시·도교육감 ■ 제27조제1항제1호(현장실습 계약 미체결, 표준협약서 미사용)에 따른 과태로 ■ 제27조제1항제2호 가목부터 다목 (현장실습 수당, 안전·보건상의 조치)까지 및 바목(현장실습 내용의 변경 절차)에 따른 과태로 고용노동부장 ■ 제27조제1항제2호라목 (현장실습 수당) 및 미목 (안전·보건상의 조치)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4조에 따른 「근로기준법」 준용 조항 해설

구분	준용 조문	요약	의미·해석	비고
본문	제36조 (금품청산)	현장실습생의 실습종료 또는 사망 시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청산, 지급할 의무	사망 또는 현장실습 종료와 같은 현장실습 계약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현장실습 산업체의 장은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현장실습 지원금 등)을 청산하여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기일은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음.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현장실습 산업체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현장실습생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실습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안됨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의 조사 및 기타 조치 의무와 괴롭힘 조사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누구든지 현장실습 산업체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고,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신고를 접수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자체없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피해 현장실습생에 대해서는 괴롭힘 사실 확인 전, 후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고, 괴롭힘 신고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관련자들은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됨.	
별치	제77조 (기능습득자의 보호)	기능 습득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흡수하거나 관계없는 업무 종사 금지	도제, 양성공, 수습 등 기능 습득을 목적으로 현장실습생에게 일정한 실습조건으로 사용하면서 흡수하거나 기능 습득과 관계없는 가사 또는 잡무 등을 지시하는 것을 금지함.	
	제107조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강제근로, 폭행, 중간착취 발생시 위반자 제재	제7조, 제8조, 제9조 위반 시 적용
	제109조제1항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금지 위반, 경내근로 실시 및 금품청산 위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시 제재	제65조 및 제72조 위반 시 적용(7년) 제36조, 제76조의3제6항 위반 시 적용
	제110조제1호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휴게시간 미부여 및 공민권 행사 미보장 시 제재	제54조 위반 시 적용(기존) 제10조 위반 시 적용
	제114조제1호 (벌칙)	500만원 이하의 벌금	생리휴가 미보장 및 기능습득자 보호 위반시 제재	제73조 위반 시 적용(기존) 제77조 위반 시 적용
	제116조제1항 (과태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로	사용자(일정 범위 내 친족 포함)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의 제재	제76조의2 위반 시 적용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6조, 제27조에 따른 벌칙 및 과태로

구분	준용 조문	요약	의미·해석	비고
벌칙	제26조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현장실습 7시간(연장 동시 8시간) 초과 실습 또는 정해진 시간(아간실습 등) 외 실습 제재	
과태로	제27조 (과태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로	현장실습 계약 미체결, 표준협약서 미사용, 현장실습 기간, 방법, 담당자 배치, 현장실습 수당, 안전·보건상의 조치, 현장실습 내용이 변경절차 등 현장실습 협약서 사항 미준수 시 제재	<과태로 부과 권한 위임> 시·도교육감 ■ 제27조제1항제1호(현장실습 계약 미체결, 표준협약서 미사용)에 따른 과태로 ■ 제27조제1항제2호 가목부터 다목 (현장실습 수당, 안전·보건상의 조치)까지 및 바목(현장실습 내용의 변경 절차)에 따른 과태로 고용노동부장 ■ 제27조제1항제2호라목 (현장실습 수당) 및 미목 (안전·보건상의 조치)